

● 제284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장 】

의안번호 210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8. 10. 17.
- 다. 회부일 : 2018. 10. 3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 건강위원회 위원의 증원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기획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1) 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안 제10조제1항)

(2) 부위원장을 기존의 1명에서 2명으로 규정(안 제10조제2항)

(3) 위원 구성에 있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2.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건을 신설하여 임기 중 참여 출석률이 40% 이상이고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3조제1항)

3. 분과위원회의 분야를 지역보건, 시립병원, 감염병 예방, 정신보건, 건강증진 등으로 세분화 함(안 제16조)

4. 위원회 내에서 주요업무의 협의, 위임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의 기능 수행하는 기획조정소위원회의 신설(안 제16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

다. 기 타

- (1) 입법예고 (2018. 8. 2. ~ 8. 22.)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도 첨부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 위원의 증원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규정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내에 기획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사항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위원 수를 늘리고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시민건강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발전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제안된 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2 주요사항 검토

가. 위원회 위원구성과 관련

- 동 조례 개정안은 시민건강위원회의 위원 수를 30명에서 50명으로 늘리는 것이 주요한 내용임(제10조제1항). 그러나 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서는 명확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
- 또한 동 위원회의 회의개최실적 등을 참고하여 볼 때 출석률은 정원대비 70%를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 외에도 정원의 50%만 참여하는 등 회의기구로서의 역할이 타당한지는 의구심이 있다고 할 것임.

<표> 시민건강위원회 회의 결과(2018년)

연번	회의날짜	주요내용	참석인원	서면/출석 여부
1	2018.2.12	제1차 시민건강위원회 정례회 개최 지역보건의료계획 '17년 시행결과 및 '18년 시행계획 심의 시민건강위원회 운영방안 토론	21	출석
2	2018.3.15	시민건강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분과위원회 운영 활성화 토론	4	출석
3	2018.4.23	제2차 시민건강위원회 정례회 개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향 토론 시민건강학교 운영방안 논의	18	출석
4	2018.6.18	제3차 시민건강위원회 정례회 개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개정 및 제3기 시민건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논의	19	출석
5	2018.10.5	시민건강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	4	출석
6	2018.10.18	제4차 시민건강위원회 정례회 개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개정 및 제3기 시민건강위원회 워크숍, 시민건강학교 운영	15	출석

- 공공보건의료재단 등의 원탁토론 등 유사한 시민참여 및 회의 관련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대하는 것이 재원의 낭비는 아닌지 고민이 필요하다 할 것임.

※ 1회성이냐 패널을 운영하는 사업이냐의 차이는 있으나 재단의 사업을 패널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임.

나. 위원회 운영과 관련

- 위원회의 위원수 증가는 위원회 운영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여기서 위원회 운영이 변화하는 것은 분과회의에의 운영 등을 법제화하는 것 등임.

-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총 5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며 각각의 분과에는 지역보건, 시립병원, 감염병예방, 정신보건, 건강증진 등이라고 하고 있음.

조례	개정(안)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u>전문 분야별로</u>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 ----- - <u>지역보건, 시립병원, 감염병 예방, 정신보건, 건강증진 등 전문</u> --.

- 전술한 바 위원회 위원의 출석율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13조 위원의 임기 부분에서 임기 중 40% 이상 위원회(분과위원회, 기획조정소위원회 각 위원을 겸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출석하고 연임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하여 연임하기 위하여서는 일정 이상의 출석률을 요구하고 있음.
- 또한 위원회의 위원구성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대표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축하려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 마지막으로 기획조정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있음(개정안 제16조의2).

3 종합의견

-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위원 수를 50명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에는 법률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임.
- 그러나 50명으로 증가하는 사유가 타당하게 제시되는 것이 없고 50명으로 늘리지 않고 타 개정사항만 반영한다 하더라도 30명의 위원으로 충분히 운영가능한 위원회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나 관계전문가 회의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만이 대안이 아니며, 이미 유사한 사업을 공공보건의료재단에서 하고 있거나 또는 이미 공공보건의료재단, 시립병원 등을 통해 다수의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바 전문성 측면만을 고려해 본다면 본 위원회의 확대가 주는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운영방식을 일부 변경한다 하더라도 동 조례 개정안의 변화대상인 위원회의 출석률 등이 제고될 것인지 의구심 있다고 할 것이며 위원회가 가진 기능이 너무 방대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함.

참고자료 1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9조(시민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사항과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건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2.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3.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시가 관할하는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6.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 법률에 따른 시정요청대상에 관한 사항
8. 지역보건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을 수행한다.

참고자료 2 <개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건강생활의 지원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혼인과 가정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혼인전에 혼인 당사자의 건강을 확인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확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광고의 금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그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하거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광고의 금지를 명할 수 있는 광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세법」에 따른 주류의 광고
2. 의학 또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건강비법 또는 심령술의 광고
3. 그 밖에 건강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기준, 변경 또는 금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보건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의 수집·관리·활용·보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용 안정과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보건의료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건강 상태에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이하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통하여 지역 주민을 대

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는 표본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흡연, 음주 등 건강 관련 생활습관에 관한 사항
2.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질병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 사고 및 중독에 관한 사항
5. 활동의 제한 및 삶의 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